이사회규정(예)

소관부서 : 회원지원부

제정 1993.12.12 규정 제 382호
개정 1995. 7.22 규정 제 482호
개정 2001. 8.25 규정 제 649호
개정 2004.10.28 규정 제 695호
개정 2005. 5.31 규정 제 727호
개정 2015.12.18 규정 제 958호
개정 2020. 7. 7 규정 제1043호
개정 2020. 8. 3 규정 제1047호(직제규정)
개정 2021.11.30 규정 제1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사회에 관해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2.18, 2020.7.7〉

제3조(기능) 이사회는 조합경영의 기본방침 및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에 한정한다)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의장이 되며,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한 감사 또는 이사대표가 의장이 된다.〈개정 1995.7.22., 2001.8.25., 2005.5.31., 2015.12.18., 2021.11.30.〉

제5조(회의) ①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장은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사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요구는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30.〕

제6조(소집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권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적은 서면통지서를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의참석이 가능한 시간전까지 전화, 인편, 그 밖에 전달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2015.12.18., 2021.11.30.〉

제7조(개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18〉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개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하고 1주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5.12.18., 2021.11.30.〉

③ 삭제〈2004.10.28〉

제8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2.18., 2020.7.7., 2021.11.30.〉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락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5.31〉

③ 제1항제2호 중 간부직원의 임면은 중앙회 사업대표이사가 배치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 2015.12.18, 2020.8.3〉

〔전문개정 2001.8.25〕

제9조(의안의 설명) 의안은 제안자인 조합장 또는 이사가 설명한다. 다만, 조합장이 제출한 의안은 간부직원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제10조(의결권의 제한) ① 이사회는 제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2021.11.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안으로 채택한다.〈개정 2015.12.18., 2021.11.30.〉

③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의안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18., 2021.11.30.〉

④ 본 조합과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1.8.25〉

⑤ 제4항의 이해관계 상반여부의 결정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8.25, 개정 2015.12.18〉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회의 진행 도중 퇴장한 이사가 많아서 남은 이사의 수가 의사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7.,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회기 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12.18., 2021.11.30.〉

제12조(서면의결) ① 이사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개의된 것으로 보며 의결방법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5.31., 2015.12.18.,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목적, 진행 및 의결사항과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면의결에 참여한 이사 전원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개정 2015.12.18., 2021.11.30.〉

제13조(표결의 방법) ① 표결은 거수 또는 투표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신설 2001.8.25〉

③ 수정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한다.〈신설 2001.8.25〉

④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신설 2001.8.25〉

제14조(회의 참여) ① 감사, 전무 및 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5.5.31〉

②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본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11.30.〉

제16조(의사록)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5.12.18., 2021.11.30.〉

1. 회의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출석이사의 성명
5. 회의 목적 사항
6. 회의의 진행 및 의결사항과 찬반이사 성명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1993.12.12. 규정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7.22. 규정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8.25. 규정 제649호〉

이 규정은 200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8. 규정 제695호〉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31. 규정 제727호〉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8. 규정 제958호〉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7. 규정 제1043호〉

이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3 규정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11.30. 규정 제1105호〉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